

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7년 10월 31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 박 상 기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4963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(이하 이 조에서는 “본인 등”이라 한다)는”을 “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혈족(이하 이 항에서는 “본인등”이라 한다)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재판소가 현행 제14조에 대하여 형제자매가 개인정보가 수록된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(2016. 6. 30. 선고, 2015헌마924 결정)함에 따라,

증명서교부 청구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